

 <p>교육부</p>  <p>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p>	<h1>보도자료</h1> <p>2021. 7. 27.(화) 배포</p>	 <p>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p>
-------------------------------------------------------------------------------------------------------------------------------------------------------------------------------------------------------------------------------------------------	-----------------------------------------	---------------------------------------------------------------------------------------------------------------

<p>보도일</p>	<p>2021. 7. 28.(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7. 28.(수) 06:00 이후 보도 가능</p>
------------	-------------------------------------------------------------------------------------------------

<p>담당</p>	<p>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p>	<p>담당자</p>	<p>팀장 교육연구사</p>	<p>전영식 (☎ 044-203-7089) 이승준 (☎ 044-203-7090)</p>
	<p>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p>		<p>과장 장학사</p>	<p>손동빈 (☎ 044-850-6105) 송경원 (☎ 044-850-6114)</p>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지원 기능 명시 추진
-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제화로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추진
- ◆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추진
- ◆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7월 27일(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던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전문위원회(「교자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근거)
(현재) 2020.9. ~ 2021.8.(1년) → (연장) 2021.9. ~ 2022.8.(1년)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7.)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외 각 기관 추천 1인으로(총 6명) 구성·운영

-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거버넌스)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 【붙임】 1.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요
 2.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 안건(요약)

붙임 1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 : 2021. 7. 27.(화), 14:00 ~ 16:00(120분)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523호 및 해당 시도교육청(영상회의)
- 위 원 : 공동의장 2명, 교육감 5명, 교육부 관계관 2명, 민간위원 3명 총 12명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성명	직위
공동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동의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원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위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위촉 위원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대표 변호사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
	허승대	서연초등학교 교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 공동 간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안순억 부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민호 사무국장

□ 세부 계획

시 간	주요 일정	비고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 및 안내 	
14:0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인사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인사말까지 공개
14:1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위원 위촉장 전수 ■ 안건 보고 및 심의 【보고 안건】 1호)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안건 추진경과 2호)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심의 안건】 1호)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2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공동 협의체 운영 	비공개
15:5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발언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1.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7개 법령 정비안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는 목적을 명확히 표현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명확히 표현
-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에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기능까지 명확하게 규정

③ 초·중등교육법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

④ 학교도서관진흥법

-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영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권위적 용어를 '제출'로 순화

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학교도서관 자료 폐기·제적의 기준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

⑥ 인성교육진흥법

- 인성교육에 관한 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평가주기에 대한 명시 없이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⑦ 학교체육 진흥법

- 체육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가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

2. 향후 계획

- 교육분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방향 수립 등 교육자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의 운영을 1년(~2022.8) 연장

*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전문위원회(「교자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근거)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공동 협의체 운영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7.)전까지 연장 운영

* 제6회 교자협에서 의결되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추진 노력

- (구성)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외 각 기관 추천 1인(총 6명)

- (운영)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운영하되, 월 1회 회의 정례화